

의안번호	2213319
의 퇴 인	곽상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C535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0조의2 (급식 지원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9조의23 (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음 ※ 안 제36조 등: 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3조(사회복지 전담공무원) 제6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, 노인일자리 사업(공익활동형)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 인력도 지원하고 있음
 - － 2025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75억원 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, 예산서상 총 68,456개소에 개소당 2,958천원 지원)

- 시·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,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－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,690억원
 - 또한,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,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
- 또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설치 하는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2024년 말 기준 노인복지관(개정안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)은 전국에 454 개소가 설치되어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및 단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안 제30조의2제3항은 급식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
 - 또한 향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설치할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와 규모를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